

제359회 임시회  
2017. 10. 17.(화)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는 도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 관련규정 ※ (공통규정)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행자부 훈령 제2호) 편성목 306 출연금

충 북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 나. 출연의 필요성

충북연구원	- 도정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충청북도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법정출연금)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여 우수 인재 발굴·양성에 기여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서의 출연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 실시

## 다. 주요사업

충북연구원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충북인재양성재단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 장학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라. 출연계획

(단위:천원)

대상기관	출연금액(도비 100%)		
	2017년(A)	2018년(B)	증감(B-A)
충북연구원	3,145,000	3,674,000	529,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00	20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620,000	650,000	30,000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0	60,000	-

※ 충북연구원 2017년 출연금액 7,945백만원(운영비 3,145, 청사건립비 4,800)

## 5. 검토의견

### 가. 출연계획 개요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2018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 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 금액을 제외한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의결토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예상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대한 해석기준(행정안전부)>

-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다. 종합의견

- 기획관리실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관련규정에 따라 4개 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출연금으로 편성·지원하고 있음.

※ 4개 출연기관: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 ○ 따라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 먼저, 충북연구원은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요과제 및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연중 도의 행정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교류 연구, 정책 솔루션 제고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충북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서 도정지원 및 수준높은 연구성과 제고를 통해 우리 충북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충북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증대 노력 등 자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21,383	1,300	1,300	1,600	1,733	2,000	2,750	2,750	7,950

## <2018년도 충북연구원 출연금 내역>

### □ 특별연구조직 운영(공공투자분석센터 )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 내역
합 계	350,000천원	400,000천원	50,000천원
사업비	144,166천원	143,603천원	△563천원
인건비	205,834천원	256,397천원	50,563천원
· 사전예타 3건 · 투융자 4회 · 연구과제 1~2건	· 사전예타 5건 · 투융자 6회 · 연구과제 3건		· 박사1인 채용
· 센터장 1인 · 박사 1인 · 석 사 1인	· 센터장 1인 · 박사 2인 · 석 사 1인		

### □ 충북연구원 운영비

○ 출 연 금 : 3,274,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세 출	2018년 충북연구원 운영비 총액(A) ※ 청사신축비, 공투센터 제외한 순수 운영비	▶ 2018년 충북연구원 운영 소요예산 중 3,274백만원 (64.5%)을 도 출연금으로 계상
세 입	2018년 충북연구원 자체수입(B)	
	2018년 도 출연금(C=A-B)	

○ 상세내역

(단위:천원)

항 목	2017	2018	증 감	사유	
<b>합 계</b>	<b>4,400,421</b>	<b>5,071,620</b>	<b>671,199</b>		
기관운영비	소 계	3,769,821	4,301,620	531,799	
	인 건 비	2,821,883	3,272,971	451,088	<증액내역> : 451백만원 증 · 총원인력 인건비 (5명) : 221백만원 · 기존 인력 인건비 : 230백만원 증 - 급여 인상분(3.4%) 53백만원 증 - 성과급 14백만원 증 - 각종 수당 등 13백만원 증 -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 150백만원 증
	경 비	790,788	979,229	188,441	<증액내역> : 188백만원 증 · 청사 관리비 증액 : 38백만원 증 - 연면적 2,477m(750평)→3,964m(1,201평)으로 63% 증가에 따라 관리비용(수도, 전기 등) 증액 · 운영비 증액(복리후생비, 전산운영비 등) : 150백만원
	예 비 비	157,150	49,420	△107,730	· 예비비 총예산의 1%내 편성
연구사업비	소 계	630,600	770,000	139,400	
	자체연구사업비	253,000	385,000	132,000	<증액내역> : 132백만원 · 신규 연구직 채용(4인)에 따른 연구비 증가 (기본과제 및 기획사업) · 미래비전 관련 연구비 증가
	분원운영	103,200	122,400	19,200	<증액내역> : 19.2백만원 · 남·북부 분원 세미나, 포럼 등 신규사업 추진
	자체특별조직운영	110,000	110,000	0	
	기획 및 세미나	164,400	152,600	△11,800	· 발간 및 세미나 등 예산 절감 운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과 재정·세제 발전 등을 위한 연구 조사 전담기관으로 1984년 설립된 이후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조사, 지방행정·재정·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5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는 2015년부터 신규로 출연을 시작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동일한 분담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출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분담금 출연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이 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연구용역 수행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반영된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17~2021 출연금 중기계획(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입 계	14,735	15,035	15,457	15,892	16,340
출연금	5,629 (38.2%)	5,829 (38.8%)	7,450 (48.2%)	7,450 (46.9%)	8,300 (50.8%)
국가출연	2,329 (15.8%)	2,529 (16.8%)	3,300 (21.4%)	3,300 (20.8%)	3,300 (20.2%)
시도출연	3,300(22.4%) ·시도 2억원 ·세종 1억원	3,300(22.0%) ·시도 2억원 ·세종 1억원	4,150(26.8%) ·시도 2.5억원 ·세종 1.5억원	4,150 (26.1%) ·시도 2.5억원 ·세종 1.5억원	5,000(30.6%) ·시도 3.0억원 ·세종 2.0억원
자체수입	9,106 (61.8%)	9,206 (61.2%)	8,007 (51.8%)	8,442 (53.1%)	8,040 (49.2%)
시도 출연금 증액분		-	증 8.5억		증 8.5억



**<2017년도 특별·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수행실적>**

- 수행 과제 : 17과제 (시도 당 1과제)

구 분	과제 수	의뢰 시.도
상반기	17과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b>충북</b>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경기

※ 우리도 :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연구('17.3~7월)

**<2018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출연금	33억원 - 16시·도 : 각 2억원 - 세종시 : 1억원	33억원 - 16시·도 : 각 2억원 - 세종시 :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개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정책과제</li> <li>▶ 지방국정과제</li> <li>▶ 지방자치 발전과제</li> </ul> </li> <li>● 현안 이슈 대응 지원</li> <li>●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li> <li>● 지방자치실천포럼</li> <li>● 공무원 역량 강화</li> <li>● 간행물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과제(시도별)</li> <li>· 15과제</li> <li>· 20과제</li> <li>· 시도별 1~2건(신규)</li> <li>· 39과제 등</li> <li>· 포럼 정착 및 성과창출</li> <li>· 시책 및 직무교육 (5~6과정, 2박3일)</li> <li>· 지방자치정책Brief 외 2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li> <li>(계속)</li> <li>(계속)</li> <li>(계속)</li> <li>(계속)</li> <li>(계속)</li> <li>(계속)</li> </ul>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08년 2월 설립되어 충북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함.

- 다만,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자체수입이 고정된 만큼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40,845	5,700	6,1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620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자문·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기관이고,

-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정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2016년, 2017년 각각 60,000천원 출연

- 우리 충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할 것임.

□ 설립개요

- 목 적 : 국가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 발굴, 양성 및 관리
- 근 거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설 립 일 : 2008. 2. 20
- 정 원 : 5명(사무국장, 직원 4)
- 설립형태 :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 기금적립액 : 781억원(2017. 9월말 기준)

※ 2016년부터 도(50억) 및 시·군(35억) 출연금 중단

⇒ 기금 이자는 사업비로 운영하고 도에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4.7억원)와 수도권장학금(1.8억원) 지원

□ 기금누계 : 78,194백만원

(‘17. 9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년도	수 입								지 출 (사업비)	잔액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일 반 기탁금	이자	기타 수입	계		
계	44,045	28,000	545	3,014	6,660	12,675	598	95,537	17,343	78,194
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16	620	-	-	-	108	1,728	545	3,001	1,946	1,055
17	620	-	-	-	61	970	35	1,686	920	766

참고 ②

장학금 지원 실적(2008~2017) 및 2018년 계획

구분	계	사업규모(명)						계	소요액(백만원)					
		'08~'13	'14	'15	'16	'17	'18		'08~'13	'14	'15	'16	'17	'18
계	11,077	5,646	1,106	1,096	1,099	1,065	1,065	15,142	8,170	1,437	1,417	1,426	1,346	1,346
성적	8,216	4,216	800	800	800	800	800	10,523	5,873	930	930	930	930	930
수도권	540	90	90	90	90	90	90	1,080	180	180	180	180	180	180
특기	785	421	77	74	73	70	70	802	451	80	65	66	70	70
곰두리	255	100	30	33	32	30	30	244	97	30	28	29	30	30
도내대학	320	120	40	40	40	40	40	640	240	80	80	80	80	80
희망	339	222	27	20	30	20	20	342	215	19	19	29	30	30
특지	108	46	21	18	13	5	5	123	81	13	10	7	6	6
지정	20	-	-	-	-	10	10	40	-	-	-	-	20	20
로스쿨	147	84	21	21	21	-	-	767	452	105	105	105	-	-
충북량	195	195	-	-	-	-	-	110	110	-	-	-	-	-
연구	40	40	-	-	-	-	-	366	366	-	-	-	-	-
꿈나무	95	95	-	-	-	-	-	86	86	-	-	-	-	-
복지	11	11	-	-	-	-	-	15	15	-	-	-	-	-
HCN	6	6	-	-	-	-	-	4	4	-	-	-	-	-

**참고 ③**

**2018년 인재양성재단 사업비 운영계획**

○ 총 출연금액 : 650,000천원

(단위:천원)

단 사 업 위 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50,000	
기관운영비	소 계	470,000	
	인건비	240,000	
	경상비	230,000	
목적사업비	장학금지원	180,000	◦ 수도권장학금 90명 × 2,000,000원 = 180,000,000원

○ 재단수입 : 1,894,000천원('18. 12월 말 예상)

- 이자수익(1,744,000천원), 기탁금(1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항 목	금 액	비 고
계		1,894,000	
목 사 업 적 비	장학금	1,166,000	특지 및 지정장학금 포함
	대학생재능기부	23,000	
	대학생토론경진대회	15,000	
	해외명문대상과의 만남	13,000	
	충북고교 진로탐색	5,000	
	기금확충(기탁자 예우 등)	2,000	
	미래지도자수련회(중·고등)	23,000	
	충북인재대학생수련회	8,000	
	재단10주년 행사	10,000	
	장학생간담회 등	3,000	
	정보화시스템	10,000	
성 과 급	성과급	23,000	
예 비 비	예비비	36,000	
적 립 금	기본재산 적립금	557,000	기탁금 150백만원(예상) 포함

**참고 ④**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14백만원 (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1 (2구간 -20%)	0.5이하 ~	24	1 (2구간 -20%)	1~15	24
2 (기준구간)	<b>0.5~0.7이하</b>	<b>30</b>	2 (기준구간)	<b>16~25</b>	<b>30</b>
3 (2구간 +20%)	0.7~0.9이하	36	3 (2구간 +20%)	26~35	36
4 (2구간 +40%)	0.9초과 ~	42	4 (2구간 +40%)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 기준으로 20%씩 차등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704, 공기업 수 평균 : 21.5(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7	2018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b>합 계</b>	<b>1,008</b>	<b>1,014</b>	<b>+6</b>	<b>10.567</b>	-	<b>522</b>	<b>366</b>	-	<b>492</b>
서울특별시	78	78		1.114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0.807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60	+6	0.724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47	3	36	14	1	24
광주광역시	54	54		0.663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6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6	60	-6	0.891	3	36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0.5	18	3	0.5	18
경기도	84	84		1.006	4	42	96	4	42
강원도	60	60		0.362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0.56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0.63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0.467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0.476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0.614	2	30	35	3	36
경상남도	66	72	+6	0.738	3	36	32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0.5	18	5	0.5	18

## 1 공통규정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령 제2호)

#### 편제목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마, 보험성격의 재해복구 (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 ② 기관별 규정

### □ 충북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총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가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⑩ 생략